

- K제약바이오 창업과 성장* -

2026년도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SI기반후보물질탐색	'26년	4월 8일 ~	5월 ~	6월 말
신약파이프라인공동개발	3월 25일	5월 7일	6월 중	

2. SI기반후보물질탐색과 신약파이프라인공동개발 과제는 세부 지원자격 및 내용이 상이하니 [붙임2], [붙임3]의 세부 지원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제약바이오벤처) 단독 신청이 아닌, 공동연구개발 기관(AI벤처 또는 제약사)과의 협력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블록버스터 후보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중기부-복지부 합동, 이하 부처 협업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①제약바이오벤처와 AI벤처의 협업을 통한 후보물질의 신속발굴, ②대·중견 제약사의 수요 기반

신약파이프라인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R&D사업입니다.

① 제약바이오벤처와 AI벤처 협업 R&D에 선정된 기업은 부처 협업방안에 기반하여 의료데이터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기부-복지부 협업에 따른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서비스 지원

- 선정이 확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표준화된 데이터 연계 서비스 제공('26년 하반기)

* 고려대학교의료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2. 파트너링 데이(기술교류회)

□ 개요

- (행사명)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 파트너링 데이
- (일시) 2026. 4. 7일(화) 13:00 ~ 17:30
- (장소) ST Center(과학기술컨벤션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 (참석대상)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관심있는 제약바이오벤처, AI솔루션 보유 중소기업, 제약사 등

□ 주요내용

- 사업 소개 및 모집공고 안내
- 대·중견 제약사 수요분야 및 AI벤처 보유 솔루션 소개
- 참여기업 간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 등

□ 운영방식 및 유의사항

-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신청(~3.30)*을 통해 참가기업 모집
* (온라인 신청페이지) <https://forms.gle/Dt4ucbT8FMJNdTVy6>
- 참가기업은 신청 시 관심협력 분야를 선택하여 접수하며, 신청 기업 수요기반 사전 매칭을 통해 해당 분야 파트너링 미팅을 운영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신약개발 AI 전환 및 제약바이오 산업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

□ (지원규모) '26년 총 100억원(30개 과제)

구분	'26년 예산	신규과제 지원규모
AI기반후보물질탐색	50억원	20개
신약파이프라인공동개발	50억원	10개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이상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AI기반후보물질탐색	최대 2년, 1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신약파이프라인공동개발	최대 3년, 30억원		품목지정 + 자유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은 [붙임2], [붙임3] 확인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 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 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6. 4. 8.(수) ~ 5. 7.(목) 18:00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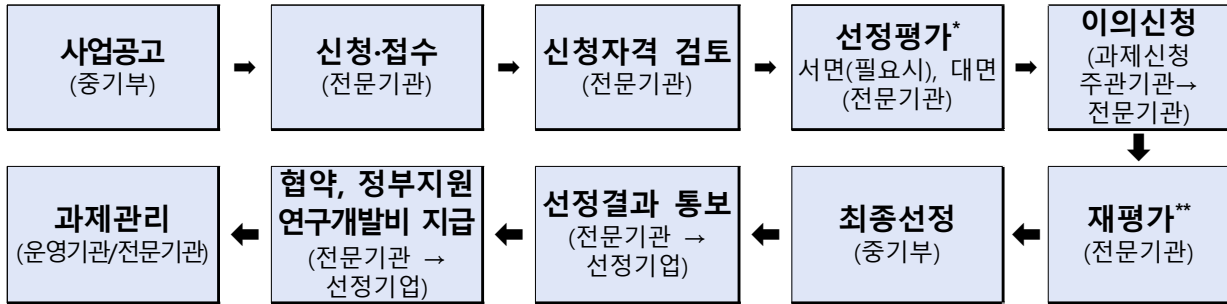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3] 참조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7. 기술료 징수관리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내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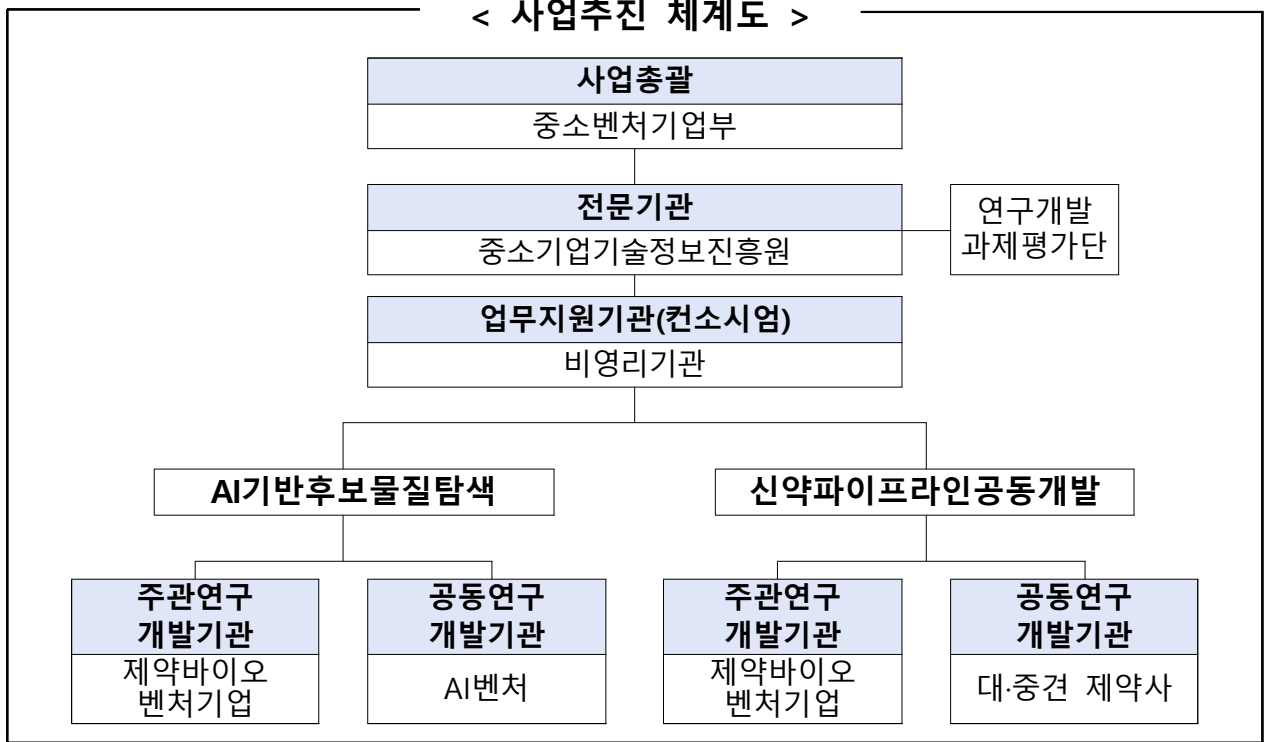
-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1fqd

-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붙임2] SI기반후보물질탐색 세부 지원내용
- [붙임3] 신약파이프라인공동개발 세부 지원내용
- [붙임4]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